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72
----------	-------

발의연월일 : 2025. 12. 11.

발 의 자 : 권향엽·김원이·강준현
문진석·이재관·김 현
박지원·한정애·이수진
박민규·김문수·박균택
정진욱·박용갑·주철현
최혁진·전종덕·이광희
황정아·장종태·위성곤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수·순천 10·19사건에 의한 희생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현행법은 이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함.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임. 이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에 따른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되었음에도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헌법재판소는 2018년

‘「민법」상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소멸시효 제도를 통한 법적 안정성과 가해자 보호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국가배상청구권 보장 필요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2014헌바148).

이에 여수·순천 10·19사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여수·순천 10·19사건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제2항과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로부터 이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을 송달받은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을 받은 사람(「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 및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소 멸시효에 관한 특례) 여수 · 순 천 10 · 19사건으로 인하여 발 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 166조제1항 및 제766조제2항과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